

제4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에 따른 서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주택 취사 및 난방을 위한 천연가스, 부생연료유 등 난방용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 퍼센트까지 인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8년 11월 28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대통령령 제2113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항 전단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제1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로,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으로,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제1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155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법 제89조제2항 본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로,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154조제
 1항에 해당하는”으로,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를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
 고 제154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년”
 을 “2년”으로 한다.

⑯ 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
 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
 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와
 연결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2년”을 “5년”
 으로 본다.

제156조의2제3항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제1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이
 경과하여”를 “2년이 지나”로,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제154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제1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67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1년이 경과하지”를 “2년이 지나지”로, “1년이 경과한”을 “2년이 지난”
 으로 한다.

3의2.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제167조의6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
 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최근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주택매매가 어려우므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
 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 배제
 또는 비과세 등 과세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건설

○

경기를 활성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되는 양도기간 확대(영 제155조제1항)

중전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중전의 주택을 양도하
면 비과세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부동산거래 부진 등으로 주
택매매가 어려우므로 그 양도기한을 2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양
도세 부담을 완화함.

나.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소
유한 경우 과세특례 허용(영 제155조제8항 신설)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의 목적으
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건
실경기를 활성화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8년 11월 28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① 국토해양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